

2024년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및 세부사항 전문과 Q&A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알림·자료실-법령자료실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알림·자료실-알림방-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4년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및 세부사항 주요 개정사항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은 어떻게 개정되었을까요?

2024년 장기요양급여비용은 노인요양시설 3.04%, 공동생활가정 3.24%가 인상되었습니다. 재가급여는 방문요양 2.72%, 방문목욕 3.06%, 방문간호 3.34%가 인상되었으며, 주·야간보호 3.05%, 단기보호 11.46%가 인상되었습니다.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1등급 2,069,900원, 2등급 1,869,600원, 3등급 1,455,800원, 4등급 1,341,800원, 5등급 1,151,600원, 인지지원등급 643,7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방문요양 급여비용은 2.72%가 인상되었습니다. 30분 이상 급여제공 시 16,630원, 60분 이상 제공 시 24,120원, 90분 이상 제공 시 32,510원, 120분 이상 제공 시 41,380원의 급여비용을 산정합니다. 150분 이상 제공 시 48,250원, 180분 이상 제공 시 54,320원, 210분 이상 제공 시 60,530원, 그리고 240분 이상 제공 시에는 66,770원을 산정합니다. 방문목욕 급여비용은 3.06%가 인상이며,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여 차량 내 목욕 제공 시 84,670원, 차량을 이용하여 가정 내 목욕 제공 시 76,340원,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 47,670원을 산정합니다. 방문간호는 급여비용이 3.34% 인상이며 15분 이상 30분 미만 급여제공 시 40,760원, 30분 이상 60분 미만 급여제공 시 51,110원, 60분 이상 급여제공 시 61,490원의 급여비용을 산정합니다.

주·야간보호 급여비용은 3.05%인상되었습니다. 1등급 수급자에게 3시간 이상 6시간 미만 급여제공 시 39,810원, 6시간 이상 8시간 미만 급여제공 시 53,360원, 8시간 이상 10시간 미만 급여제공 시 66,360원을 산정하며 10시간 이상 13시간 이하 급여제공 시 73,110원을, 13시간 초과하여 급여제공 시 78,400원을 산정합니다. 다른 등급의 급여비용은 표를 참고해주세요. 단기보호 1일당 급여비용은 11.46% 인상이며 1등급 70,500원, 2등급 65,280원, 3등급 60,310원, 4등급 58,720원, 5등급 57,110원을 산정합니다.

계속해서 노인요양시설의 급여비용은 어떻게 개정되었을까요?

노인요양시설의 1일당 급여비용은 3.04% 인상되었는데요, 배치한 요양보호사 수가 입소자 2.3명 당 1명 이상인 기관에서는 1등급 84,240원, 2등급 78,150원, 3등급에서 5등급 수급자는 73,880원을 산정합니다. 2.3명당 1명 미만인 기관은 표를 참고해주세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1일당 급여비용이 3.24% 인상이며 1등급 71,010원, 2등급 65,890원, 3등급에서 5등급 수급자는 60,740원을 산정합니다.

다음은 치매전담형 기관의 급여비용입니다. 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은 급여비용이 3.05% 인상되었습니다. 2등급 수급자에게 3시간 이상 6시간 미만 급여제공 시 46,350원, 6시간 이상 8시간 미만 급여제공 시 62,170원, 8시간 이상 10시간 미만 급여제공 시 77,350원, 10시간 이상 13시간 이하 급여제공 시 85,210원을 산정하며 13시간을 초과하여 급여를 제공했을 때는 91,340원을 산정합니다.

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의 경우 1일당 급여비용이 3.04% 인상되었습니다. 치매전담실 가형은 2등급 수급자에게 급여제공 시 92,260원, 나형은 2등급 수급자에게 급여제공 시 83,040원을 산정하며, 가형이 3등급에서 5등급 수급자에게 급여제공 시 85,080원, 나형이 3등급에서 5등급 수급자에게 급여제공 시 급여비용 76,560원을 산정합니다. 치매전담형

노인공동생활가정의 급여비용은 3.24% 인상되어, 2등급 수급자에게 급여제공 시 1일당 81,670원, 3등급에서 5등급 수급자에게 급여제공 시 75,300원의 급여비용을 산정합니다. 다음은 의사소견서 및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입니다.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의사소견서 및 방문간호지시서의 발급비용은 1.6% 인상되었으며 보건기관에서 발급한 경우는 2.7%가 인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 의사소견서를 의료기관에서 발급 시 52,870원, 보건기관에서 발급 시 49,300원을 산정하며, 치매의사소견서를 의료기관에서 발급 시 25,930원, 보건기관에서 발급 시 22,570원의 발급비용을 산정합니다. 수급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방문간호지시서를 발급받는 경우에는 21,860원, 보건기관을 방문하여 방문간호지시서를 발급받는 경우에는 5,930원의 발급비용을 산정합니다. 의료기관의 의사가 수급자 가정을 방문하여 방문간호지시서를 발급했다면 68,970원, 보건기관의 의사가 수급자 가정을 방문하여 방문간호지시서를 발급했다면 12,790원의 발급비용을 산정합니다. 계약의사의 진찰비용은 1.67% 인상되었는데요, 초진 시 17,610원, 재진 시 12,590원의 진찰비용을 산정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족요양비는 2023년 223,000원에서 2024년 229,07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024년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주요 개정사항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2024년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이 15가지 항목으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1. 인건비 지출비율 변경 2.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기준 신설 3. 선임 요양보호사의 정의 및 수당 산정방법 신설 4. 중증 수급자의 방문요양급여 이용량 확대 5. 주·야간보호 목욕서비스 가산 기준 개선 6. 치매가족휴가제 확대 개편 7. 단기보호기관 한시적 지원금 신설 8. 치매전문교육 교육과정 및 과목 변경 8-1. 치매전문교육 이수 인정자 추가 8-2. 치매전문교육 이수과정에 대한 특례 9. 가·감산 제도 적용 기준 조정 10. 정원초과 감액 기준 조정 11. 인력배치기준 위반 감액 기준 조정 11-1. 인력배치기준 위반 감액 산정 특례 직종 확대·적용기간 완화 12.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 가산 기준 명확화 13. 가족인 요양보호사 제공 방문요양 급여관리 의무화 14. 근무인원수 산정방법 개선 15. 맞춤형서비스 제공 가산 적용 요일 확대

지금부터 해당 고시에 따라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시 제11조의2, 인건비 지출비율이 변경되었습니다. 노인요양시설은 61.1%,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65.4%, 주·야간보호는 48.7%로 변경되었습니다. 단기보호는 59.0%, 방문목욕은 49.8%, 방문간호는 60.4%로 변경되었으며, 방문요양은 86.6%로 2023년 인건비 지출비율과 동일합니다.

다음으로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기준이 신설되었습니다.

대면 교육의 방법으로 보수교육을 이수한 가정방문급여기관 소속 요양보호사는 교육이수일이 속하는 연도를 기준으로 2년에 1회 95,000원의 비용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대상은 방문요양 또는 방문목욕을 제공하는 요양보호사만 해당합니다. 다만 팀장급 요양보호사 등 교육이수월에 고시 제51조에 따라 근무인원수로 산정되는 요양보호사는 비용 산정이 불가합니다. 요양보호사가 보수교육을 이수했다면 교육이수일에 근무 중인 장기요양기관 1개소를 선택하여 이수증을 제시하고, 장기요양기관은 요양보호사를 대신하여 해당 비용을 공단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을 요양보호사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OX 퀴즈입니다! 문제를 잘 듣고 정답을 맞춰보세요! 2024년 5월 10일까지 주·야간보호기관의 요양보호사로 근무를 하다가 5월 11일부터 방문요양기관의 요양보호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5월 20일에 보수교육을 이수했다면 보수교육에 따른 비용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정답은 X입니다!

고시 제11조의5제2항은 고시 제51조에 따라 근무인원수로 산정되는 요양보호사에게는 보수교육에 따른 비용을 산정하지 않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보수교육 이수월인 2024년 5월에 주·야간보호기관 소속 요양보호사로 근무한 이력이 있으므로 고시 제51조에 따라 근무인원수로 산정되는 요양보호사에 해당하기 때문에 보수교육에 따른 비용을 산정할 수 없습니다.

신설된 선임요양보호사의 기준 및 수당 산정방법을 알아보까요?

고시 제11조의6, 제11조의7이 신설되면서 선임요양보호사의 기준 및 수당 산정방법이 신설되었습니다. 2024년 10월 1일부터 입소자 50명 이상인 노인요양시설은 선임 요양보호사를 지정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때 선임 요양보호사란, 요양보호사로 시설급여기관에서 근무한 기간이 월 120시간 이상, 60개월 이상이며 승급교육을 이수한 자를 말합니다. 선임요양보호사는 신체활동지원 및 일상생활지원 등 요양보호사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1 요양보호사 등에게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술 지도, 2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 등 각종 기록의 확인 및 점검, 3 종사자 간 갈등 중재 및 고충 상담, 4 선임 요양보호사 업무 수행일지 작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선임 요양보호사 수당을 산정할 때에는 대표자인 요양보호사는 산정에서 제외되며, 월 기준 근무시간 이상 근무하고 선임 요양보호사의 업무를 수행한 선임 요양보호사 1명당 월 150,000원의 수당을 산정하게 됩니다. 이때 월 기준 근무시간은 퇴사특례 적용기간, 출산전·후 휴가기간, 유·사산휴가를 30일을 초과하여 사용중인 기간 등 실제로 근무는 하지 않았지만 인정되는 근무시간을 제외하고 실제 근무한 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장기요양기관의 입소자가 50명 이상 75명 미만인 기관은 선임 요양보호사 수당을 2명까지 산정할 수 있고, 입소자 75명 이상인 기관은 입소자 수 25명마다 1명씩 선임 요양보호사 수당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기관은 공단에 수당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후, 지급받은 선임 요양보호사 수당을 고시 제11조의7제1항 각 호를 모두 충족한 선임 요양보호사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OX 퀴즈입니다! 문제를 잘 듣고 정답을 맞춰보세요! 2019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공동생활가정 요양보호사로, 2022년 1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주·야간보호기관 요양보호사로, 2022년 7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로 매월 120시간 이상 근무를 했습니다. 요양보호사 근무 경력의 60개월 이상인데, 선임 요양보호사로 지정할 수 있나요?

정답은 X입니다!

선임 요양보호사는 시설급여기관에서 근무한 기간이 60개월 이상인 요양보호사 경력을 요건으로 하며, 이 때 '60개월'의 의미는 공단에 신고된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시설급여기관에서 요양보호사로 월 120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1개월로 산정합니다.

사례의 경우, 노인요양시설 또는 공동생활가정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한 54개월은 선임 요양보호사 근무경력 요건에 포함되나, 2022년 1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주·야간보호기관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한 6개월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번 개정사항에 중증 수급자의 방문요양급여 이용량이 확대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렇습니다. 고시 제19조와 관련하여 중증 수급자의 방문요양급여 이용량이 확대되었습니다. 요양보호사는 1등급 또는 2등급 수급자에게 월 8일에 한하여 270분 이상 연속하여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게 변경되었습니다. 3등급 또는 4등급 수급자의 경우 월 4일에 한하여 210분 이상 연속하여 방문요양급여 제공이 가능합니다.

OX 퀴즈입니다! 문제를 잘 듣고 정답을 맞춰보세요! 월 중 장기요양등급이 3등급에서 2등급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미 월 중에 210분 이상 연속 급여를 4회 이용하였는데, 2등급의 270분 이상 연속 급여를 더 사용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정답은 O입니다!

2등급은 월 8회까지 270분 이상 연속 급여를 이용할 수 있으므로, 등급 변경 전에 이미 이용한 4회를 포함하여 270분 이상 연속 급여를 월 최대 8회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야간보호 목욕서비스 가산 지급 기준은 어떻게 개선되었나요?

고시 제35조와 관련하여 주·야간보호 목욕서비스 가산 지급 기준이 개선되었습니다.

2023년까지는 주·야간보호기관이 수급자에게 목욕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월 4회 한도 내에서 주 1회 가산금 산정이 가능했지만, 월 4회 한도 기준이 삭제되고 주 1회 가산금 산정이 가능해졌습니다.

치매가족휴가제의 장기요양 가족휴가제로의 확대도 설명해주세요.

고시 제36조의2, 기존의 치매가족휴가제가 장기요양 가족휴가제로 확대 개편되었습니다.

2023년까지는 치매가 있는 1·2등급 수급자는 단기보호 9일 또는 종일 방문요양 18회를 이용할 수 있었지만, 2024년 이후에는 치매수급자를 포함한 모든 1·2등급 수급자가 단기보호 10일 또는 종일 방문요양 20회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치매가 있는 3등급에서 5등급 수급자와 인지지원등급 수급자는 단기보호 9일만 이용 가능했으나, 단기보호 10일 또는 종일 방문요양 20회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OX 퀴즈입니다! 문제를 잘 듣고 정답을 맞춰보세요! 5등급 수급자에게 종일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반드시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여야 하나요? 정답은 X입니다!

치매가족휴가제가 장기요양 가족휴가제로 확대 개편됨에 따라 2024년부터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도 종일 방문요양급여의 이용이 가능하며, 종일 방문요양급여 제공 시에는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가 아닌 일반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단기보호 한시적 지원금이 신설되었는데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고시 제38조의2에 단기보호 한시적 지원금 관련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이는 단기보호기관의 지속적인 감소로 단기보호기관의 접근성이 악화되어, 단기보호기관의 진입을 유도하고 수급자의 접근성을 강화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2028년 12월 31일까지 단기보호기관으로 사업을 개시한 기관에 한하여 단기보호기관이 수급자에게 단기보호급여를 제공한 경우 최초 산정 월부터 36개월까지 월 1회 단기보호 한시적 지원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비용은 급여비용을 산정한 이용일을 기준으로, 이용일수 월 5일 이상인 수급자 1인당 월 100,000원, 이용일수 월 4일 이하인 수급자 1인당 월 50,000원을 산정하며, 해당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지 않습니다.

OX 퀴즈입니다! 문제를 잘 듣고 정답을 맞춰보세요! 단기보호기관 한시적 지원금을 받고 있는 기관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해당 월에 일체의 급여제공을 하지 못한 경우 지원금

산정을 할 수 있나요?

정답은 X입니다!

한시적 지원금은 수급자의 이용일수에 따라 비용을 산정하므로, 급여비용을 산정한 이용일이 없다면 해당 월에는 지원금을 산정할 수 없습니다. 또한 지원금을 산정하지 않는 월도 총 산정 가능기간(최초 산정 월부터 36개월)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1월부터 지원금을 산정한 기관이 2024년 5월부터 7월까지 급여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라도 지원금은 2026년 12월까지 산정 가능합니다.

세부사항 제22조의2 관련하여 치매전문교육 교육과정 및 과목이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의 방문요양, 시설 과정, 프로그램관리자 과정이 요양보호사 과정과 프로그램관리자 과정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요양보호사는 치매전문교육 요양보호사 과정을, 프로그램관리자는 프로그램관리자 과정을 이수한 경우 인지활동형 급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고시 제77조 관련하여 치매전문교육 이수 인정자가 추가되었습니다.

네, 2024년 1월1일부터 요양보호사 양성과정이 개정되면서, 2024년 1월 1일 이후 시행되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320시간의 요양보호사 표준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교부받은 자는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이에 따라 치매전문교육의 이수 없이 인지활동형 급여 제공이 가능해졌습니다 다만, 320시간의 요양보호사 표준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않은 요양보호사는 별도의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만 인지활동형 급여 제공이 가능합니다.

또한, 세부사항 부칙 제2조 관련하여 치매전문교육 이수과정에 대한 특례를 신설하였습니다.

네. 2024년 치매전문교육 교육과정이 요양보호사 과정 및 프로그램관리자 과정으로 개정되면서, 기존의 방문요양 과정 및 시설 과정을 이수한 자는 치매전문교육 요양보호사 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이에 따라 2023년까지 방문요양 또는 시설 과정을 이수한 자는 2024년부터는 급여유형 구분 없이 인지활동형 급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가·감산 제도 개정 사항에 대해 말씀해주시겠어요?

네 그럼 가·감산 제도 개정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고시 제54조 중 정원초과 및 인력배치기준 위반과 관련하여 개정된 내용입니다. 정원초과 감액 적용 시 초과 일수와 관계없이 해당 월의 인력추가배치 가산 등 모든 가산이 불인정되었는데요, 올해부터는 정원초과 발생 비율을 제외한 해당 월 급여 제공일수의 비율만큼 가산점수를 인정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정원초과 시 가산점수 산정방법은 세부사항 제13조의2에 명시된 가산점수 산정비율을 참고해 주세요.

또한, 이전에는 한 직종이라도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하면 모든 직종의 인력추가배치 가산이 미적용 되었는데, 개정 이후에는 인력배치기준 위반 직종을 제외한 타 가산 직종에 대해서는 가산이 인정됩니다. 그러나 3개 이상 직종이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했을 시에는 인력추가배치 가산이 전체 미적용됩니다.

OX 퀴즈입니다! 문제를 잘 듣고 정답을 맞춰보세요!

10일의 정원 초과 감액이 발생한 노인요양시설인데 정원 초과 감액 발생 시 모든 가산이 불인정 되나요?

정답은 X입니다!

24년 1월 1일부터 정원 초과 감액이 발생하더라도 정원 초과 발생일을 제외한 해당 월

급여 제공 일수의 비율을 기준으로 인력추가배치 가산, 간호사배치 가산, 야간직원배치 가산, 맞춤형서비스 제공 가산 산정이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급여제공일이 31일인 달에 정원 초과 발생일이 10일인 경우, 10일을 제외한 21일에 대해 비율을 기준으로 가산점수를 산정합니다. 만약 이 기관의 사회복지사 추가배치 가산점수가 1.4점이라면 정원초과 감액 시 세부사항 제13조의2의 가산점수 산정식에 따라 산정된 가산점수는 0.84점이 됩니다.

또 한번 OX 퀴즈입니다! 문제를 잘 듣고 정답을 맞춰보세요! 요양보호사 미 배치로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하였다면 사회복지사를 추가로 배치하였어도 가산을 인정받을 수 없나요?

정답은 X입니다!

종전에는 인력배치기준 위반 시 타 직종 인력을 추가 배치 하더라도 가산이 인정되지 않았으나, 2024년 1월 1일부터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하더라도, 타 직종이 인력추가배치 가산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그 직종의 인력추가배치 가산이 가능해졌습니다. 다만, 3개 직종 이상 인력배치기준 위반 시 종전과 같이 전 직종의 인력추가배치 가산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고시 제54조제5항에 명시된 가산 적용 근무인원수 미포함 대상자에 ‘유산·사산휴가를 30일을 초과하여 사용 중인 직원’이 추가되었습니다.

법정 유산·사산휴가 기간별 가산 적용 인정 범위는 아래 표를 확인해주세요.

OX 퀴즈입니다! 문제를 잘 듣고 정답을 맞춰보세요! 직원이 임신기간 중(25주) 유산하여 45일의 유급 유산 휴가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1일 최대 8시간씩 인정된다고 하던데 45일 모두 가산인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정답은 X입니다!

45일의 유급 유산 휴가를 사용한다면 30일까지는 가산인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나 30일을 초과하는 기간은 겸직인 직원, 출산전·후휴가 중인 직원, 퇴사특례를 적용받는 직원과 같이 가산 적용을 위한 근무인원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음은 고시 제65조 정원초과 감액 관련 개정 사항입니다.

표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기존 정원 초과비율이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되었는데요, 10% 이상 구간이 10% 이상 20% 미만, 20% 이상 30% 미만, 30% 이상 구간으로 세분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급여비용 산정 비율 또한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되며 차등화가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고시 제66조 인력배치기준 위반 감액 관련 개정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력배치기준 위반 감액이 적용되는 직종이 요양보호사,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조리원, 위생원, 보조원 또는 운전사 총 7개 직종에서 시설장, 영양사가 추가된 총 9개 직종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직종별 결원수에 따른 감액 점수도 조정이 되었는데요, 종사자가 일부 결원된 경우와 완전 미배치한 경우에 대하여 감산점수 차이가 확대되었습니다.

이어서 고시 제67조 인력배치기준 위반 감액 산정 특례입니다.

감액 직종이 7개에서 9개로 확대되면서 퇴사특례 적용 직종 또한 시설장, 영양사가 추가되었습니다. 또한 퇴사특례를 적용받기 위해, 2023년에는 퇴사한 직원이 근무종료일이 속하는 달을 기준으로 해당 급여유형에서 직전 6개월 간 월 기준 근무시간 이상 근무하여야 했으나 올해부터는 직전 3개월 이상 근무 시 적용이 가능해졌습니다.

OX 퀴즈입니다! 문제를 잘 듣고 정답을 맞춰보세요! 시설장의 갑작스런 퇴사로 이번 달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하였습니다. 인력배치기준 위반 감액이 적용되나요?

정답은 O입니다!

시설장은 종전까지 인력배치기준 위반 감액 직종에 포함되지 않아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감산되지 않았으나 '24년 1월 1일부터 감액직종에 시설장과 영양사가 추가되어 결원 수에 따라 감산이 적용됩니다.

또한 시설장과 영양사가 퇴사특례 직종으로 추가되어 퇴사한 시설장이 근무종료일이 속하는 달을 기준으로 해당 급여유형에서 직전 3개월간 월 기준 근무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인력배치기준 위반 감액산정 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고시 제57조 및 제58조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 가산 기준이 명확화되었습니다.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업무수행이 불가피한 사유중 '월 중에 급여 제공을 종료한 경우'로 명시되어 있던 내용을 명확화하여 '수급자의 사정으로 월 중에 급여 제공을 종료한 경우'로 개정되었습니다. 또한 급여관리업무에 대해 정의하였는데요, 급여관리업무란 첫째, 매월 1회 이상 급여제공시간 중 수급자의 가정 방문, 둘째, 적정 서비스 제공 확인 및 수급자의 욕구 사정, 급여제공계획 등을 수립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족이 제공하는 방문요양급여에 대한 서비스 질 관리를 위하여 고시 제69조의2 방문요양 급여관리 의무가 신설되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따라서 장기요양기관은 2024년부터 요양보호사가 가족관계에 있는 수급자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한 경우 급여관리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2025년부터는 급여관리 업무를 50%미만 수행 시 감액이 적용됩니다.

OX 퀴즈입니다! 문제를 잘 듣고 정답을 맞춰보세요! 요양보호사와 가족관계인 수급자에게 방문요양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급여관리 업무를 수행해야 하나요?

정답은 O입니다!

종전에는 사회복지사 1명을 의무배치 해야 하는 방문요양기관이 급여관리 업무를 수행하지 않더라도 감액을 적용하지 않았으나, '24년 1월 1일부터 요양보호사가 가족관계인 수급자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방문요양기관의 사회복지사,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팀장급 요양보호사는 해당 수급자에 대하여 급여관리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이때 가족관계에 있는 요양보호사로부터 방문요양급여를 제공받는 수급자에게 급여관리 업무를 50% 미만으로 이행한 경우, 2025년 1월 1일부터 요양보호사와 가족관계인 수급자에게 제공한 전체 방문요양 급여비용의 90%를 산정합니다.

또 한번 OX 퀴즈입니다! 문제를 잘 듣고 정답을 맞춰보세요! 가족관계인 요양보호사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받는 20명을 포함한 전체 수급자 50명의 방문요양기관입니다. 고시에 명시된 " 수급자 수의 50%미만 " 의 기준은 50명인가요?

정답은 X입니다!

가족관계인 요양보호사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받는 수급자 20명을 기준으로 급여관리 업무를 50% 미만으로 이행한 경우, 가족관계인 요양보호사가 제공한 전체 방문요양 급여비용의 90%를 산정합니다.

또한 해당 월에 가족인 요양보호사와 일반 요양보호사로부터 방문요양급여를 모두 제공받는 수급자에게 가산 사회복지사 등이 가족요양 급여제공 시간에 방문하는 경우 고시 제57조의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 가산을 위한 급여관리 업무와 고시 제69조의2 방문요양 급여관리 의무에 따른 업무수행으로 모두 인정 가능합니다.

다음은 세부사항 제12조, 근무인원수 산정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대표자인 시설장의 휴가가 확대되어 「근로기준법」 제60조를 준용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세부사항 제12조제1항제3호 마목, 장기요양 직무관련 해외연수 근무시간 인정 기준이 신설되었습니다. 장기요양 직무 해외연수는 장기요양 해외동향 및 사례를 살펴보고 돌봄서비스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연간 7일 이내의 범위에서 실제 소요된 시간에 대해 1일 최대 8시간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구비서류로는 해외연수 결과보고서를 작성해야 하고 항공권 등의 증빙자료를 보관해야 합니다.

OX 퀴즈입니다! 문제를 잘 듣고 정답을 맞춰보세요!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해외연수가 근무시간으로 인정 가능한가요?

정답은 O입니다!

종사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장기요양 직무 해외연수의 경우 연간 7일 이내의 범위 내에서 실제 교육받은 시간에 대해 1일 최대 8시간 인정 가능합니다.

다만, 근무시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종사자는 별지 제25호서식 및 별지 제25호의2서식을 참고하여 교육시간 관리대장, 해외연수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고 항공권 등 증빙자료를 장기요양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부사항 제19조 맞춤형서비스제공 가산 적용 요일의 확대 사항을 알려주세요. 네, 종전에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중에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할 경우에 인정되었으나 개정 이후 월요일부터 일요일로 확대되어 토요일, 일요일에 제공하는 경우 가산 적용을 위한 제공횟수로 인정됩니다.

OX 퀴즈입니다! 문제를 잘 듣고 정답을 맞춰보세요! 토요일에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더라도 맞춤형서비스제공 가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정답은 O입니다!

종전에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평일에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할 경우 인정되었으나, 2024년 1월 1일부터 주말(토·일요일)에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더라도 가산 적용을 위한 제공 횟수로 인정 가능합니다.

다만,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을 통한 수급자의 건강수준 유지 및 개선의 가산 취지를 고려해보았을 때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최대한 많은 수급자가 참여할 수 있는 날에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024년 장기요양급여 제공 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및 세부사항 주요 개정 사항에 대한 안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영상은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저작물로, 무단 수정 및 복제 등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의해 처벌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